

## 일본의 국립공원 경관관리를 위한 시설물정비에 관한 법제도적 특성<sup>1</sup>

신의순<sup>2</sup> · 배중남<sup>3</sup>

### A Characteristic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for Landscape Management of National Park Facilities in Japan<sup>1</sup>

Ick-Soon Shin<sup>2</sup> · Jung-Nam Bae<sup>3</sup>

#### 요 약

본 연구는 일본 국립공원의 경관관리를 위한 법제적 내용특성 중 공원시설물을 위주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국적 기준인 일본의 자연공원법규의 내용을 경관관리 측면에서 정리한 후, 아소·쿠주(阿蘇・くじゅう)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공원계획서와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전국적 기준과 지역적 관리기준의 차이를 파악하면서 국내법규와의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자연공원법규 중 우리 나라와 차이가 있는 공용제한의 내용과 공원계획의 내용 및 공원시설물의 차이를 파악하였고, 공원 내 각종행위에 관한 심사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이 조사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집단시설지구에서의 이용허가 및 규제내용을 명시한 국립공원 내의 집단시설지구 등 관리규칙과 각 공원현장에서 현지에 적합한 경관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국립공원관리소장이 작성하는 관리계획은 보호·유지할 지역의 경관자원을 명확히 하면서 각종 시설물의 건설행위에 대해 그 규모, 위치, 색채, 디자인 관련 사항 등에 관하여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자연공원법규, 관리계획, 국립공원시설물, 경관보전

#### ABSTRACT

Characteristics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for landscape management of national park facilities was clarified in this study.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nationwide and local landscape management standards of national park facilities in Japan, the park and the management plans of Aso-Kuju National Park were viewed and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related Korean regulations was carried out. As a result of these studies, it was grasped that the nature of public use restriction, park plan and park facilities, and the legislation of the examination standards about the various actions within the park in Japan were different from those in Korea. The management regulations for the collective facilities zone and the

1 접수 9월 30일 Received on Sep. 30, 2000

2 호남대학교 도시·조경학부 School of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Honam Univ., Kwangju, 506-714,  
Korea (isshin@honam.honam.ac.kr)

3 큐슈대학 농학연구원 삼림자원과학 Faculty of Agriculture, Department of Forest and Forest Products Sciences,  
Kyushu Univ., 811-2415, Fukuoka in Japan

management plan within the national park in Japan don't have a legal basis, but characterize the landscaping resources at the region, which is required to be protected and sustained by a management guide for the scale, location, color, design of national park facilities.

**KEY WORD : NATURAL PARK ACT, MANAGEMENT PLAN, NATIONAL PARK FACILITIES, THE CONSERVATION OF LANDSCAPE**

## 서 론

자연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수려한 자연경관이나 자연생태계가 존재하는 곳을 지정하여 자연경관을 보호하면서 이용증진을 도모하는 곳이다. 일본의 자연공원법에서는 國立公園, 國定公園, 都道府縣立공원으로 자연공원을 3개 단위로 나누고, 국립공원의 지정목적을 국가풍경을 대표하는 수려한 자연풍경지를 보호하면서 그 이용의 증진을 국민보건과 보양, 교화 등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정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일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자연공원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원계획 방침에 따라 각종 시책을 실시하여 자연공원이 지니고 있는 자연경관자원을 보호·유지하면서 이용증진을 추구해 가기 위한 이상적인 공원관리가 필요하다.

공원관리는 자원관리, 시설관리 및 이용자관리 등의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공원의 보호와 이용의 기초가 되는 것은 귀중한 공원자원의 관리이며, 자연공원의 성격을 고려하면 공원이 지니고 있는 자연경관관리이다. 이러한 자연공원은 일반적으로 면적이 넓고, 도시로부터 거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현지에서의 적절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므로 각 공원에는 현지의 공원관리사무소를 두고 있다. 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와 환경부 소관의 재산관리, 이용자지도, 공원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공원사업을 위한 공원계획의 수립 및 공원시설물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공원의 경관자원은 각종 인허가와 공원사업행위의 심사기준·지침 등에 의하여 보호·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연공원에 관한 기존연구를 보면, 공원 내 존재하는 자원특성에 관한 연구(김계환 등, 1998; 임윤희 등, 1999), 공원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김용근 등, 1996; 유기준 등, 2000), 자연경관변화와 인식을 기초로 한 것들로서 조망경관의 인식특성(古谷 등, 1994), 조망지점에서의 자연경관 평가특성(沼本 등, 1996) 등의 연구가 있고, 자연경관과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에 있어서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연구(배중남, 1994; 김대현 등, 1999; 서주환 등, 1999) 등이 있다. 또한 자연보존구역 설정의 단위를 공원의 가치, 즉 공원 내 표고와 지형조건, 식생의 분포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등 용도지구제의 개선을 제안한 연구가 있다(조태동 등, 1997). 한편 생태계 보전을 고려한 공원시설물의 정비 및 조성(오구균 등, 1999)에서는 공원시설물에 대한 자연보전성과 환경조화성을 다루었고, 공원시설의 친환경성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자연공원법제를 고찰(신익순 등, 2000)한 연구도 있으나, 자연경관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특성과 공원시설물 계획 및 관리를 위한 기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국립공원의 관리이념이 풍경지 보호와 적정한 이용도모에서 자연생태계 및 풍경지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전제로 한 관리로 전환된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자연공원의 기초가 되는 자연경관자원의 보호육성이 공원관리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21세기 공원관리는 자연경관의 보호·육성에 역점을 둔 공원시설물의 정비·조성, 공원계획 및 이용자 교화 등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와 자연공원제도가 비교적 유사하고 자연공원제도를 우리보다 조기에 시작한 일본 자연공원법규 및 관리계획 등에서 경관관리를 위한 법규내용 및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분석한 후, 국내법규와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자연공원제도의 발전 및 현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공원의 경관관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립공원 경관관리 및 친환경적 자연공원관리에 기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연 구 방 법

본 연구는 일본의 자연공원법인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자연공원법시행규칙과, 공원계획서,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환경청 자연보호국장의 통지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등 관리규칙 및 국립공원의

관리계획서 등의 내용을 경관관리의 관점에서 분석·정리하는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는 자연경관침해 및 변형에 관련이 깊은 공원 내 각종 행위에 대해 어떻게 규제 및 지도를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한·일간 공원시설물의 종류를 파악한 후, 법규차원에서의 경관관리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크고, 지역개발 및 정비, 사업시설 등으로 출현빈도가 높은 건축물, 차도, 광고물 및 집단시설지구 등의 공원시설물을 대상으로 경관관리 내용을 정리·분석하였으며, 국내법 규와의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또 아소(阿蘇)·쿠쥬(くじゅう) 국립공원을 사례 대상지로 선정하여 공원계획서 및 관리계획서의 내용으로부터 공원특성을 고려한 경관관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전국적 기준과 지역적 기준 및 지침에 관한 차이를 파악하였다.

## 결과 및 고찰

일본의 자연공원 경관관리는 전국적인 관점(일반적인)에서는 자연공원법에 근거한 지역(구)별 공용

제한, 공원계획, 식생복원 및 청소 등의 보전사업, 자연공원법시행규칙에 의한 공원 내 각종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 국립공원 내의 집단시설지구 등 관리규칙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적(각 공원별) 관점으로는 자연공원법규를 토대로 한 행위의 인허가에 더하여 현지에 적합한 경관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국립공원관리소장이 작성하는 관리계획서를 토대로 하고 있다.

먼저 법규에서 지정하고 있는 공원시설물에 대한 특성 및 한국의 자연공원시설물과 비교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 1. 공원시설물의 한·일 비교

일본의 자연공원법 제2조에서 공원계획은 공원보호와 이용을 위한 규제와 시설에 관한 계획이라고 정의하고, 공원계획을 토대로 집행하는 사업을 공원사업이라고 하여 국립공원과 국정공원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시설에 관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공원시설물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조에 열거되어 있고, 일본에서는 공원시설물을 공원사업 정의에 직접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원시설물은 공원의 보호계획과 이용계획에 따라 보

Table 1. Park plan and park facilities in Japan Natural Park Act

공원계획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의한 시설물	시설물 성격
보호 계획	보호를 위한 규제계획 보호를 위한 시설계획	공용제한(용도지구) 수경시설, 복원시설	식생복원시설 동물번식시설 사방시설 방화시설(소계 4개)
이용 계획	이용을 위한 규제계획 이용을 위한 시설계획	이용제한 집단시설지구, 단독시설	도로 및 교량 광장 및 원지 숙사 및 피난소 휴게소, 전망시설, 안내소 야영장, 운동장, 수영장, 선착장, 스키장, 스케이트장, 승마시설 차고, 주차장, 급유시설, 승강기 운송시설(공원 내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선박, 철도, 수 상비행기) 급수시설, 배수시설, 의료구급시 설, 공중욕장, 공중변소, 오물처 리시설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전시시설, 야외극장(소계 41 개)
			보호 시설 설 이용 시설 설 교통 설 숙박 설 보건 설 교화 설 위생 설 그 외 시설

Table 2. Comparison of park facilities between Korean Natural Park Act and Japan's

한·일 공동시설	한국 특유시설	일본 특유시설
도로·교량, 대피소(피난소), 휴게소, 전망대(전망시설), 야영장, 수영장, 선유장(선착장), 스케이트장, 승마장, 운송시설 중 자동차·선박, 급수시설, 배수시설, 약국 및 병원(의료구급시설), 목욕장업(공중목욕탕), 공중변소(공중화장실),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전시장(박물전시시설), 야외공연장(야외극장), 공원관리사무소, 안내소 등	운송시설 중 궤도·삭도, 기념품·탐방용품 및 일상용품의 판매시설, 식품점객·조리판매업, 이용 및 미용업에 준하는 시설, 유기장, 실내공연장 등, 호텔, 여관, 유스호스텔, 산장 등, 매표소, 우체국, 경찰관파출소 등의 공공시설과 은행, 어린이놀이터, 청소년수련시설, 저수지, 낚시터, 자연학습장, 호안, 방책, 조림 및 조경시설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공원환경을 조성하며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시설, 각종 시설의 부대시설 등	원지, 숙사, 운동장, 스키장, 이용자를 위한 차고 및 주차장, 금유시설 및 승강기, 오수처리시설, 식생복원시설, 동물번식시설, 양어시설, 사방시설, 방화시설 등

호시설과 이용시설로 나누어지고, 보호를 위한 시설로서 수경시설과 복원시설이 있고, 이용시설로는 자연공원이용 거점으로 각종 이용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한 집단시설지구와 차도, 숙사, 원지 등의 주요 단독시설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1).

한국의 국립공원시설물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서 8개군으로 구분하여 열거되어 있는데 이를 일본의 공원시설물과 비교해 보기 위해서 한·일 공동시설, 한국 특유시설, 일본 특유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했다(Table 2). Table 1과 Table 2에서 공원시설물에 관한 차이를 비교해 보면, 보호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하고 있고, 보호시설에는 이용자보호만이 아니고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복원시설로서 식생복원시설 및 동물번식시설 등과 시설물 기능 중 교화시설이 있다. 아소(阿蘇)·쿠쥬(くじゅう)국립공원 공원계획서에서는 보호시설계획에 식

생복원시설 4개를 다루고 있는데 이용자의 이용에 따른 식생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것과 화산가스 및 해충에 의한 피해로부터 주요 식물군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 집단시설지구는 우리나라 용도지구의 하나인데 반하여 일본에서는 용도지구가 아닌 이용시설의 하나로 분리하고 집단시설지구 등 관리규칙과 관리계획을 토대로 경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 2. 일본의 자연공원법에서 본 경관관리

일본의 자연공원법에서 경관관리는 크게 공용제한과 보전사업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공용규제란 공원계획의 내용상 보호를 위한 규제행위의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나라 용도지역별 행위규제에 대한 제도와 유사한 것이다. 이러한 공용제한을 일본의

Table 3. Comparison of zoning areas between Korean Natural Park and Japan's

지구종류	일본의 용도구분	지구 성격	한국의 용도구분	
특별보호지구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특별지역 내에 지정함	특별보호지구	자연보존지구	
특별지역	제1종 제2종 제3종	특별보호지구에 준하는 경관이 있는 지역 특별지역 중 풍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가장 높은 지역 제1종 및 제3종지역에 포함하지 않는 지역 농림어업활동에 조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풍치유지가 비교적 낮은 지역 농림어업활동이 풍치유지에 미칠 영향이 적은 지역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환경지구
보통지역	특별지역 및 해중공원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취락지구(집단시설지구)	

자연공원법 제17조(특별지역), 제18조(특별보호지구, 해중공원지구), 제20조(보통지역)에서의 각종 개발행위와 자연공원의 풍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조정 등의 내용과 지역구분기준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비교했다(Table 3).

법 제17조는 풍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특별지역은 자연경관과 풍치의 수려함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법 제18조에서는 특별보호지구에서의 행위규제를 정하고 있는데, 특별보호지구는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지역 내에 지정할 수 있다. 이는 일본 자연공원법에서의 경관이 풍치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일본의 특별보호지구와 제1종특별지역은 한국의 자연보존지구에 해당하며, 제2종특별지역과 제3종특별지역은 한국의 자연환경지구에 해당된다. 기타 특별지역 및 해중공원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인 보통지역은 한국의 취락지구 또는 집단시설지구에 해당한다. 특별지역, 특별보호지구, 보통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신고제와 허가제의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4와 같고, 특별보호지구에서의 행위규제가 가장 엄한 것을 알 수 있다.

자연공원을 대상으로 하여 일본이나 한국에서 적용되어지는 지역제공원관리제도<sup>1)</sup>에서는 공원구역 내에서 일정범위의 개발행위와 토지이용 등이 인정되어 있지만, 풍치·경관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는 인공구조물의 신축, 삼림벌채 등에 대해서는 공원 경관관리를 위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연공원법규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각종 개발행위와의 조정 행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신고제와 허가제로 구분된다. 신고제는 경관에 지장이 없는 일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한 행위의 규제이며, 허가제는 개발행위의 그 자체의 시비판단을 하는 규제이다(Table 4).

Table 4. Comparison of permission and statement activities by zoning areas within Japan Natural Park

행위구분	지구구분 (자연공원법)	행위 규제 / 내용		
허가제	특별지역 (제17조)	① 인공구조물 신축 등, ② 수목벌채, ③ 광물과 토석채취, ④ 하천·호수의 수위 수량의 증감, ⑤ 지정호수에 오수의 배출, ⑥ 광고물의 설치 등, ⑦ 수면매립, ⑧ 토지형상변경, ⑨ 지정식물의 채취 등, ⑩ 지붕·벽면 등 의 색채변경, ⑪ 지정지역에서의 차마의 승차	제1종 특별지구	인공구조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 특별보호지구에 준함.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 은 원칙적으로 허가
	특별보호 지구 (제18조)	② 수목훼손, ③ 수목식재, ④ 가축방목, ④ 물건의 집적, ⑤ 화기소유 및 모닥불, ⑥ 식 물채취, ⑦ 동물포획, ⑧ 차마 등의 승차	제2종 특별지구	보호소, 별장 등은 경관을 해치 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 지형, 수리이용상 다른 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땅, 수력발전소 등은 조건부 허가
	해상공원 지구 (제18조 2)	① 인공구조물 신축 등, ② 광물과 토석채 취, ③ 광고물 설치 등, ④ 지정동식물포획, ⑤ 해면매립, ⑥ 해저형상변경, ⑦ 물건의 계류, ⑧ 오수의 배출	제3종 특별지구	제2종 특별지구과 거의 동일 임업에 의한 법체 허가
사전 신고제	보통지역 (제20조)	① 대규모 인공구조물 신축 등, ② 특별지 역 내의 하천, 호수의 수위나 수량 증감, ③ 광고물 설치 등, ④ 수면매립, ⑤ 광물 과 토석채취, ⑥ 토지형상변경, ⑦ 해저형 상변경		특별보호지구와 동일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구조물 등에 대해서 경관보전을 위한 행정조치

한편, 양호한 경관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식생경관관리, 식생복원 및 청소 등의 보전사업을 하고 있다. 식생경관관리는 자연천이의 변화가 보호방침에 맞지 않으면 적당한 인위적 간섭으로 자연천이의 방향을 수정하여 공원지정에 근간이 되는 양호한 경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연보호가 중요한가, 양호한 경관보호가 중요한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자연공원의 보호방침과 생태학적 조사를 통하여 신중하고 적절한 인위적 관리가 필요하다. 경관관리에 주요 대상이 되는 것은 ① 천이도중의 특정식물 경관보호, ② 병충해 방지로 동식물 경관보호, ③ 토사 유·출입으로부터 식물 경관보호 등이다.

식생복원은 귀화식물의 제거, 까마귀나 시궁쥐 등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서식하는 동물의 구제, 공원내에 난립된 쓰레기는 자연경관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식물생육과 동물의 식성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자연생태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는 공원 내 경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이나 미화청소사업 등을 담당하는 재단법인 자연공원미화관리재단(1979년 설립)은 보전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3. 일본의 국립공원 관리계획과 행위허가기준에서 본 경관관리

자연공원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각종 행위별 허가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환경청 자연보호국장 이름으로 통지하여 사용되어 온, 국립공원 내(보통지역을 제외)의 각종 행위에 관한 심사지침은 2000년 4월부터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1조 행위허가기준으로 법규화되었다. 한편 각 공원별로는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980년 이후부터 경관관리를 해 오고 있다. 일본의 행위허가기준은 한국의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 용도지구 내에서의 행위기준과 유사하며, 일본의 국립공원 관리계획은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본 특유의 제도이다.

#### (1) 관리계획의 내용과 작성현황

국립공원 관리계획은 1980년 7월 21일 환경청 자연보호국장이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 각 공원지역설상에 적합한 공원보호와 이용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공원 내 각 지구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시설디자인, 사용색채, 녹화방법 등의 지도방침 및 시설관리나 인허가 취급방침을 수립한 것이다. 따

라서 현지공원사무소에서는 관련법규 이외 관리계획서의 취급방침에 따라 인허가 및 시설물관리에 임하고 있다.

관리계획은 공원별 담당지역의 경관특성과 관리업무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공원을 복수지역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관리계획에서 주로 취급해야 하는 내용은 ① 풍치경관관리, ② 지역개발 및 정비, ③ 토지 및 사업시설의 관리, ④ 이용자 지도, ⑤ 지역의 미화·수경, ⑥ 그 외 공원의 적정한 보호와 이용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으로 관리계획구<sup>2)</sup>에 따라 상기의 특정항목을 중점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보면 공원의 풍치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인허가 취급방침에 관한 사항이 관리계획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청 자연보호국장이 연초에 관리계획을 수립할 공원을 지정하고, 지정 받은 공원관리사무소장은 필요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작성 및 개정하여 연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관리계획의 각 공원별 작성현황은 Table 5와 같다. Table 5를 보면 28개 국립공원 중 Kushiro Shitsugen, Chichibu-Tama, Ogawasawara, Minnami Alps 등 4개 공원 이외의 모든 공원은 1980~90년대에 작성 및 개정을 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리계획서는 대부분의 공원에서 2 내지 3개 관리계획구로 나누어 수립하고 있지만, Setonaikai 국립공원과 같이 9개 지역까지 구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한 곳도 있어 공원별 특성에 따라 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리계획은 대부분 1~2년의 조사연구기간을 걸쳐서 작성하였고, 5~10년이 지나서 개정을 하고 있다.

#### (2) 각종 공원사업행위에서의 경관관리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서 다루는 각종 행위의 허가기준과 아소(阿蘇)·쿠쥬국립공원<sup>3)</sup>의 아소지역 관리계획서와 쿠쥬지역의 관리계획서의 내용으로부터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크고, 지역개발 및 정비, 사업시설 등으로 출현빈도가 높은 건축물, 차도, 광고물, 집단시설지구 등의 공원시설물을 대상으로 경관관리를 위한 내용을 정리했다(Table 6~10).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각종 행위에 대한 불허지역을 특별보호지구, 해중공원지구, 제1종 특별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더불어 ① 고산대, 아고산대, 풍총대, 습원 등 식생복원이 곤란한 지역, ② 야생동식물들의 서식처, 생육지나 번식지로서 중요한 지역, ③ 지형, 지질이 특이한 지역 및 특이한 자연현상을 나타나는 지역, ④ 수려한 천연림과 학술

Table 5. The present condition of making the management plans by Japan National Parks

Name of national park	Classified areas for the management plans	Making year	Revision1	Revision2
1. Rishiri-Rebun-Sarobetsu	the whole area	1984-85	-	-
2. Shiretoko	the whole area	1980-81	1986	1991-92
3. Akan	Akan	1981-82	1986	1992
	kawayu	1982-83	1990	-
4. Kushiro Shitsugen	-	-	-	-
5. Daisetsuzan	-	1984-85	-	-
6. Shikotsu-Toya	Shikotsu	1988-89	1993-96	-
	Youteizan · touya · Noberibetu	1986-87	1992-93	-
7. Towada-Hachimantai	Towada · hakkouda	1981-82	1986	-
	Hachimantai	1984-85	-	-
8. Rikuchu Kaigan	the whole area	1986-87	1993	-
	DewasanzanAsahi	1987-88	-	-
9. Bandai-Asahi	Bandaizuhainawasiro	1982-83	1989	-
	Nasukasi · Siobara	1985-86	1993-94	-
10. Nikko	Nikko	1989-90미완	-	-
	Oze	1982-1984	-	-
	Hanza · kusatu	1980-81	-	-
11. Joshinetsu Kogen	Sigakogen	1980-81	-	-
	Myoukoukougen	1981	1989	-
	Togakusi	1981	1989	-
12. Chichibu-Tama	-	-	-	-
13. Ogasawara	-	-	-	-
	Izusyoudo(oosimastyou)	1987-88	1991	-
	Izusyoudo(hatijyoujima)	1989	1992	-
14. Fuji-Hakone-Izu	Izusyoudo(miyakejima)	1993-94	-	-
	Hakone	1983-84	1988	-
	Huzisan	1981-82미완	-	-
	Izuhando	1985-86	1990	-
	Hokubu	1987-88	-	-
	Gotadeyama	1994-96	-	-
15. Chubu Sangaku	Nanbu	1991-92	-	-
	Norikura	1983-84	1992	-
	Kamikouti	1989-90	-	-
16. Hakusan	the whole area	1985-86	-	-
17. Minami Alps	-	-	-	-
18. Ise-Shima	the whole area	1984-85	1988-89	1993-94
19. Yoshino-Kumano	Yoshino	1981-82	1989	-
	Kumano	1982-83	1990	-
20. Sanin Kaigan	the whole area	1987-88	1992	-
	Rokko	1986	1993	-
	Wazirosima	1989-91	1993	-
	Wakayamaken	1993-94	-	-
	Okayamaken	1988-89	-	-
21. Setonaikai	Hirosimaken	1987-88	-	-
	Yamakutiken	1992-93	-	-
	Tokusimaken	1985-88	1992-93	-

Table 5. (Continued)

Name of national park	Classified areas for the management plans	Making year	Revision1	Revision2
22. Daisen-Oki	Setogaikyo	1987-88	-	-
	Ooitaken	1990-91	-	-
	Daisen · Hiruzen	1983-84	1991-92	-
	Simanehanto, Oki	1985-86	1992-93	-
23. Ashizuri-Uwakai	Sabesan	1982	1992-93	-
	Ashizuri	1981-82	-	-
	Uwakai	1983-84	-	-
24. Saikai	Gosimaretuto	1980-81	1992-93	-
	Hirado · Kujuyuukusima	1980-81	1994	-
25. Unzen-Amakusa	Unzen	1987-88	1991	-
	Amakusa	1990-91	-	-
26. Aso-Kuju	Aso	1980-81	1988-89	-
	Kuju	1980-81	1989-90	-
	Kirisima	1985-86	-	-
27. Kirisima-Yaku	Winkouwan	1982-84미완	-	-
	Yakusima	1983-84미완	-	-
28. Iriomote	the whole area	1982-83	-	-

적 가치를 지닌 인공림 지역 등의 4개 유형의 특정지역으로 하고 있다.

관리계획에서는 공원구역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건축물, 차도 및 집단시설지구와 단독시설에 관하여 풍치경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취급방침을 다루고 있다.

### ① 건축물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건축유형을 가설건축, 거주용 건축, 농림어업 등 거주자들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건축, 별장·호텔 등 영업 및 레저용, 그 외 건축 등으로 5개 타입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대상별로 규제내용을 명기하고 있다(Table 6). 지역 거주자 및 농림업을 위한 건축물은 신축, 개축, 증축시에 주요 조망지나 조망대상에 현저한 지장을 미치지 않을 것과 지붕, 벽면의 색채 및 형태가 주변자연과의 조화를 현저하게 어지럽히지 않을 것 등을 법규에 명확히 하였고, 거주자용 주택에 대해서 높이가 13m 이하로 되어 있다.

반면, 집합주택·별장·분양지 등에서 건설되는 건축물은 총면적 2,000m<sup>2</sup>이하로 하면서, 건설되는 용도지역과 부지면적에 따라 총건축면적은 10~20%, 총연면적은 20~60%까지의 차등을 주어 허가하고 있다. 또 건축에 관련된 토지의 경사도는 30% 이하로 하고, 주요 도로로부터 20m 거리를 두

어 건설하며 부지경계선에서 5m 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원 내 건축물 건설행위로부터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고자 건축물에 대해서는 규모, 형태, 위치, 색채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소·쿠쥬국립공원의 아소지역과 쿠쥬지역의 관리계획도 관리계획구에 따라서 건축물의 규제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아소지역과 쿠쥬지역은 각 3개의 관리계획구로 나누고 있지만, 카르데라 화산을 중심으로 펼쳐진 넓은 초원경관 보호를 위해서 쿠쥬지역의 3개 관리계획구 모두 건축높이를 1층으로 정량화하여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아소지역은 중앙화구구지구에서는 최소구도, 화구원지구는 경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게 하지 않는다고 정성적 지침을 주고 있는 반면에, 외륜산지구는 주요 도로 중심선 양측으로 100m 전역과 주변식생이 넓은 초원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등을 불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각 지구 공통적인 것은 지역경관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능한 최대한으로 건축벽면의 후퇴를 유도하고, 디자인측면에서도 지붕경사의 범위를 2/10~10/10 이하로 규정하고, 벽면 및 지붕색채는 갈색계, 회색계 등의 사용색채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아소·쿠쥬국립공원의 지역 주요 경관자원인 산진달래 군락과 카르데라의 경관 및 카르데라 화산을 중심으

Table 6. The contents of the building regulations within Japan Natural Park

허가불허 용도지역	허가불허 특정지역	기타지역: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규제내용	
	(1) 철거되는 것이 명확한 가설 건축물	철거에 대한 계획이 명확히 세워져 있어 해당계획에 있어서 철거 후 적지의 정리사업이 시행되게 되어 있는 것	
	(2) 당해지역 내 거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혹은 본 심사 지침의 시행일 현재, 당해특별지역내에 거주하는자의 주택, 주택부분을 포함한 건축물 또는 이러한 건축물과 용도상 불가결의 관계에 있는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가 13m를 넘지 않는 것	
자연공원법 규	① 고산대, 아고산대, 풍총대, 습원 등 식생 복원이 곤란한 지역  ② 야생동식물들의 서식처, 생육지나 번식지로서 중요한 지역  ③ 지형, 지질이 특이한 지역 및 특이한 자연현상이나 나타나는 지역  ④ 수려한 천연림과 학술적 가치를 지닌 인공림 지역	(3) 농림어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건축물  (4) 집합별장, 집합주택, 분양호텔, 보양소 혹은 분양지 등 부지 안에 건설되는 건축물  (5) (1), (2), (3) 및 (4) 이외의 건축물  건축물 (4), (5) 공통  건축물 (1)~(5)의 신축, 개축, 증축	주택, 주택부분을 포함한 건축물 및 이러한 건축물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건축물은 제외  ① 높이가 10m를 넘지 않을 것 ② 부지가 명확한 것은 당해 부지면적이 1,000m <sup>2</sup> 이상일 것. 집합별장, 집합주택 및 분양호텔의 부지면적을 호수 및 분양 수에서 제외한 면적이 250m <sup>2</sup> 이상일 것 ③ 총건축면적 및 총연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 제2종 특별지역은 각각 20% 이하, 40% 이하, 제3종 특별지역은 각각 20% 이하, 60% 이하. ④ 건축물에 관련되는 토지지형구배가 30%를 넘지 않도록 할 것 ⑤ 건축물에 관련되는 토지 및 그 주변의 토지가 자연초지, 저목초지, 채소방목지 또는 교목생육이 곤란한 지역이 아닐 것 ⑥ (1), (2), (3)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제외 ① 높이가 13m를 넘지 않는 것 ② 부지가 명확히 되어 있는 것으로 총건축면적 및 총연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 각각 다음 호에 게재한 것 이하로 한다. ④ 제2종 특별지역에서는 부지면적이 500m <sup>2</sup> 미만의 건축물 10%, 20% ⑥ 제2종 특별지역에서는 부지면적이 500m <sup>2</sup> 이상 1,000m <sup>2</sup> 미만의 건축물 15%, 30% ⑦ 제2종 특별지역에서는 부지면적이 1,000m <sup>2</sup> 이상의 건축물 20%, 40% ⑧ 제3종 특별지역에서는 각각 20%, 60% ⑨ 건축물에 관련되는 토지의 지형구배가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 ① 건축물의 수평투영의주선이 각각 해당각호에서 제재하는 거리 이상으로 떨어져 있을 것 ⑩ 공원사업에 따른 도로 그 외 주로 공원이용에 제공되어지는 도로의 노선 20m ⑪ ⑩에 제재된 도로 이외 5m ⑫ 부지경계선 5m ⑫ 건축면적이 2,000m <sup>2</sup> 이하가 되는 것 ① 주요 조망지에서 전망하는 장소에 현저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② 산등선을 분단하는 등 조망대상에 현저한 지장을 미치지 않는 것. ③ 지붕, 벽면의 색채 및 형태가 주변의 자연과의 조화를 현저하게 어지럽히지 않는 것

Table 6. (Continued)

아 소 지 역				ку 쥬 지 역			
중앙화구지구	화구원지구	외륜산지구	구주산군지구	야마나미하이지구	由布鶴見山群지구	관	
-산진달래군락을 피하고, 주요 전 망지에서 보이지 않는 장소에 입 지	-카르테라 경관 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건물높 이를 높게 하지 않음	-공원 주요 도로 변에는 신축과 증축을 불허함	-주요 도로 및 천 지에 신축시 도 로로부터 멀리 터 멀리 후퇴한 도로 중심선에서 양측으로 100m 까지는 초원인 경우 건물의 신 축 및 증축 불허	-건축벽면선 후퇴 -디자인 단순형태 -지붕경사 2/10 하	-습지에 악영향을 주는 시설은 불 허		
-외관은 눈에 띄 지 않도록 하고, 형태와 색채 지 도	-지붕경사 2/10 이상	-가설, 농립업 용, 공익상 필 요한 건물, 기존 건물의 개축시 에도 도로로부터 멀리 후퇴한 도로 중심선에서 양측으로 100m 까지는 초원인 경우 건물의 신 축 및 증축 불허	-보통지역 내 초 지에 신축시 도 로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높이를 낮게 하도록 지 도함	-지붕색채는 진한 갈색, 회색, 벽 면은 갈색, 회 색, 황백색계	-건축벽면선 후퇴 -디자인 단순형태 -지붕경사 2/10 하		
판 리 계 획	-주변 식생에 영향 이 미치지 않도록 가능한 조치를 하 고 되돌려 놓는 식재 이외의 것은 금지	-벽면색채는 원 색 및 형광색을 피함	-디자인 및 색채 는 중앙화구구 지구와 동일	-디자인 단순형태 -지붕경사 2/10 1층	-초지 내 건축은 1층		
	-가설, 농립업용, 공익상 필요한 건물, 기존전몰의 개축, 공원시설 에서 멀리 보이 는 건축물 등외 에는 불허가	-도로 중심선에서 양측으로 100m 까지는 초원인 경우 건물의 신 축 및 증축 불허	-지붕색채는 진한 갈색, 회색, 벽 면은 갈색, 회 색, 황백색계	-초지 내 건축은 1층			
	-넓은 초원에서 는 필요최소의 규모로 함	-디자인 및 색채 는 중앙화구구 지구와 동일					
	-디자인은 단순 하고 평범						
	-지붕경사 2/10 에서 10/10 이하						
	-지붕색채는 진 한 갈색, 회색, 벽면은 갈색, 회 색, 황백색계						

로 펼쳐진 넓은 초원경관 등의 조망에 지장이 없도록 하거나 보호를 위해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 및 지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법규에서는 건축행위 불허지역 중 특정 지역을 추상적인 지역특성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관리계획에서는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및 지역의 경관 자원을 명확히 하면서 이를 위하여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차도

차도건설행위에 관한 규제를 Table 7에 정리하였다. 차도건설은 특별보호지구 및 전술한 4개 유형의 특정지역에서는 불허하고, 법규에서는 신축과 증·

개축의 건설행위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는데 신축은 공원이용이나 공익상 필요로 하는 차도,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및 생산활동에 차도건설 이외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경우 외에는 허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또 차도의 증·개축시에도 차도선형을 지형에 순응시켜 대규모 절토나 성토를 동반하지 않도록 하고, 차도건설시에 발생하는 범면은 원칙적으로 향토종 수목을 이용하여 녹화하며 잔토처리는 공원 밖으로 반출하거나 특별지역의 풍치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다.

관리계획은 차도의 신·개·증축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외류산지구에서는 카르테르 경관, 중앙화구

Table 7. The contents of the roadway regulations within Japan Natural Park

행위	규제 내용																																								
개축 자 연 공 원 법 규	<p>이하의 각호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p> <p>(1) 성토부분의 토사가 유출 혹은 붕괴되지 않도록 조치가 충분히 강구되어 있는 것</p> <p>(2) 잔토를 특별보호구, 해중공원지구 및 제1종 특별지역 외로 반출하거나 특별지역의 풍치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처리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p> <p>(3) 법면이 교통안전상 및 방재상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녹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 녹화방법이 향토종을 사용하는 등 행위지 및 그 주변의 상황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것. 단 법면이 경암으로 녹화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p> <p>(4) 선형을 지형에 순응시켜 대규모 절토나 성토를 동반하지 않도록 배려된 것.</p> <p>(5) 특별보호지구 및 인공구조물 허가불허 지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p>																																								
증축 자 연 공 원 법 규	<p>이하의 각호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p> <p>(1) 이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것, 단, 자전거 전용의 것은 예외</p> <p>① 농림어업, 광업, 채석업 등 용도의 차도를 건설하는 이외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p> <p>②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용도로 제공되는 것</p> <p>③ 공의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차도를 건설하는 이외에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p> <p>④ 자연공원법에 허가를 받거나 받을 것이 확실한 행위의 장소에 도달하기 위해 건설하는 것으로 차도를 건설하는 이외의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p> <p>⑤ 자연공원법에 허가를 받거나 받을 것이 확실한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p>																																								
신축 자 연 공 원 법 규	<p>아소 지역</p> <table border="1"> <thead> <tr> <th>중앙화구지구 화구원지구</th> <th>외륜산지구</th> <th>구주산군지구</th> <th>야마나미하이 웨이지구</th> <th>由布鶴見山群 지구</th> </tr> </thead> <tbody> <tr> <td>-초원에서 농림업 및 공의상 필요 한 것 이외는 원칙적으로 불허</td> <td>-카르테르벽에서 는 농림업 및 공 이상 필요한 것 이외의 것에 대 한 신설은 불허</td> <td>-상기 이외의 지역에서는 중앙 화구구와 동일</td> <td>-귀중한 식물과 습원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함</td> <td>-주변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함</td> </tr> <tr> <td>-산진달래군락은 희피</td> <td>-호울타리는 가드로프나 가드레일(타이용시설에서의 조망에 지장이 큰 것은 지주나 레일에 친한 갈색)</td> <td></td> <td>-법면은 녹화(모르타르 시공 후는 덩굴성 식물에 의한 녹화)</td> <td>-법면은 녹화(모르타르 시공 후는 덩굴성 식물에 의한 녹화)</td> </tr> <tr> <td>-방호 울타리는 가드로프나 가드레일(타이용시설에서의 조망에 지장이 큰 것은 지주나 레일에 친한 갈색)</td> <td>-상기 이외의 지역에서는 중앙 화구구와 동일</td> <td></td> <td>-돌망태, 펜스 등의 색채는 친한 갈색이나 희색</td> <td>-돌망태, 펜스 등의 색채는 친한 갈색이나 희색</td> </tr> <tr> <td>-법면은 녹화(모르타르 시공후는 덩굴성 식물에 의한 녹화)</td> <td></td> <td></td> <td>-자연석이나 자연석에 준한 옹벽을 원칙으로 함</td> <td>-자연석이나 자연석에 준한 옹벽을 원칙으로 함</td> </tr> <tr> <td>-돌망태, 펜스 등의 색채는 친한 갈색이나 희색</td> <td></td> <td></td> <td>-잔토처리는 보통지역이나 공원구역 밖에서 적절히 처리</td> <td>-잔토처리는 보통지역이나 공원구역 밖에서 적절히 처리</td> </tr> <tr> <td>-자연석이나 자연석에 준한 옹벽을 원칙으로 함</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잔토처리는 보통지역이나 공원구역 밖에서 적절히 처리</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중앙화구지구 화구원지구	외륜산지구	구주산군지구	야마나미하이 웨이지구	由布鶴見山群 지구	-초원에서 농림업 및 공의상 필요 한 것 이외는 원칙적으로 불허	-카르테르벽에서 는 농림업 및 공 이상 필요한 것 이외의 것에 대 한 신설은 불허	-상기 이외의 지역에서는 중앙 화구구와 동일	-귀중한 식물과 습원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함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함	-산진달래군락은 희피	-호울타리는 가드로프나 가드레일(타이용시설에서의 조망에 지장이 큰 것은 지주나 레일에 친한 갈색)		-법면은 녹화(모르타르 시공 후는 덩굴성 식물에 의한 녹화)	-법면은 녹화(모르타르 시공 후는 덩굴성 식물에 의한 녹화)	-방호 울타리는 가드로프나 가드레일(타이용시설에서의 조망에 지장이 큰 것은 지주나 레일에 친한 갈색)	-상기 이외의 지역에서는 중앙 화구구와 동일		-돌망태, 펜스 등의 색채는 친한 갈색이나 희색	-돌망태, 펜스 등의 색채는 친한 갈색이나 희색	-법면은 녹화(모르타르 시공후는 덩굴성 식물에 의한 녹화)			-자연석이나 자연석에 준한 옹벽을 원칙으로 함	-자연석이나 자연석에 준한 옹벽을 원칙으로 함	-돌망태, 펜스 등의 색채는 친한 갈색이나 희색			-잔토처리는 보통지역이나 공원구역 밖에서 적절히 처리	-잔토처리는 보통지역이나 공원구역 밖에서 적절히 처리	-자연석이나 자연석에 준한 옹벽을 원칙으로 함					-잔토처리는 보통지역이나 공원구역 밖에서 적절히 처리				
중앙화구지구 화구원지구	외륜산지구	구주산군지구	야마나미하이 웨이지구	由布鶴見山群 지구																																					
-초원에서 농림업 및 공의상 필요 한 것 이외는 원칙적으로 불허	-카르테르벽에서 는 농림업 및 공 이상 필요한 것 이외의 것에 대 한 신설은 불허	-상기 이외의 지역에서는 중앙 화구구와 동일	-귀중한 식물과 습원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함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함																																					
-산진달래군락은 희피	-호울타리는 가드로프나 가드레일(타이용시설에서의 조망에 지장이 큰 것은 지주나 레일에 친한 갈색)		-법면은 녹화(모르타르 시공 후는 덩굴성 식물에 의한 녹화)	-법면은 녹화(모르타르 시공 후는 덩굴성 식물에 의한 녹화)																																					
-방호 울타리는 가드로프나 가드레일(타이용시설에서의 조망에 지장이 큰 것은 지주나 레일에 친한 갈색)	-상기 이외의 지역에서는 중앙 화구구와 동일		-돌망태, 펜스 등의 색채는 친한 갈색이나 희색	-돌망태, 펜스 등의 색채는 친한 갈색이나 희색																																					
-법면은 녹화(모르타르 시공후는 덩굴성 식물에 의한 녹화)			-자연석이나 자연석에 준한 옹벽을 원칙으로 함	-자연석이나 자연석에 준한 옹벽을 원칙으로 함																																					
-돌망태, 펜스 등의 색채는 친한 갈색이나 희색			-잔토처리는 보통지역이나 공원구역 밖에서 적절히 처리	-잔토처리는 보통지역이나 공원구역 밖에서 적절히 처리																																					
-자연석이나 자연석에 준한 옹벽을 원칙으로 함																																									
-잔토처리는 보통지역이나 공원구역 밖에서 적절히 처리																																									
관 리 계 획																																									

구지구에서는 넓은 초원, 산진달래군과 같이 지역의 귀중한 자원 및 자원이 있는 구체적인 지역을 제시하면서 용도지역상 제2, 제3종지역에서도 차도를 불허하고 있다. 차도설계를 위한 지침으로는 귀중한 경관 자원을 피하고, 방호울타리(가드레일), 표지판, 법면 처리, 옹벽, 돌망태·돌울타리, 잔토처리, 연도변 녹

화 및 폐도 등의 취급에 관하여 각 항목별로 유도방향을 기술하면서 사용 색채도 친한 갈색이나 희색을 제시하여 건축물에 사용되는 색채와 통일감을 주면서 사용색채수를 가능한 억제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차도는 공원이용의 주요 동선이며 주요 조망점

으로서 법규 및 관리계획에서 안전성을 기초한 가드로프나 레일이 조망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그 높이나 위치에 관한 지침과 투시성이 높은 재료의 선정을 위한 지침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③ 광고물

법규 및 관리계획의 내용에서 광고물에 관한 규제 내용을 정리하였다(Table 8). 광고물규제는 사업부지에 있는 광고물, 사업부지로 유도하는 광고물, 해설판, 간이시설에 설치되는 광고물 등으로 모두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이시설에 설치되는 광고물 이외에는 표시면적의 총합이  $10m^2$  이하, 높이는 5m 이하로 되어 있고, 광원의 색채는 백색계통으로 지정하면서 움직이는 광원이나 홍색광원은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사업장으로 유도하는 간판의 규모는  $1m^2$  이하로 하고, 복수광고의 정비시 총합이  $10m^2$  이하이며 설치위치도 주요 도로의 분기점으로 한정하고 있다. 사업장에서는 규모가  $5m^2$  이하로 2개소까지로 한정하여 표시면적의 총합이  $10m^2$  이하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서는 표시면적의 계산방법도 제시되어 인허가에 명확한 기준을 보여 주고 있다.

관리계획에서 본 광고물의 규모, 위치 등은 법규에 준하고 있으나 광고물을 지도·안내판류와 상업용으로 구분하여 규제내용을 담고 있다. 법규에서 주·홍색의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색채에 대한 구체적인 유도를 하고 있지 않지만 관리계획에서는 지도·안내판은 글자에 사용하는 색채와 바탕색으로 사용하는 색채를 구분하여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조명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상업용 광고물에 관해서도 법규에 준하고 있지만 사용색채를 진한 갈색으로 유도하면서 사용 색수를 최소화하고, 입간판을 불허하여 자연공원 내에 불필요한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의자, 휴지통 등의 간이시설에 광고물이 첨부될 경우에도 시행규칙에 의한 규제를 통하여 자연공원의 분위기를 유지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광고물 중 예외로 취급하는 것으로는 구급병원·경찰·보안목적 등 특수한 용도, 사찰경내의 제전 등과 같은 임시행사와 지방의 연중행사, 지역주민에게 일정사항을 알리기 위한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등이며 그 외의 모든 광고물은 자연공원법규 및 관리계획서의 관리지침,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옥외광고물조례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다.

### ④ 집단시설지구 등

집단시설지구는 공원이용시설이 공원 내 만연하거나 산재되는 것에 따라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꽤적인 공원이용을 위하여 공원계획으로 지정되는 지구로서 공원시설이 집중적으로 도입되는 곳이며 이용허가 및 규제가 적용되는 곳이다. 우리나라에는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와 이용을 하고, 일본은 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 등 관리규칙과 각 공원에서 수립한 공원관리계획서에 의해 각 집단시설지구별로 취급방침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 나라와 일본의 집단시설지구의 상세용도를 비교한 것이 Table 9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집단시설지구 내의 시설도입에 관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열거하여 집단시설지구 내에서도 각종 시설의 혼재를 피하고 있다. 특히, 상세용도에서 주목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시설지역이 있으나 일본은 없다는 것과 우리나라에는 없는 자연탐승구, 교화시설구 등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립공원 내에서 집중적인 이용을 위해 지정한 곳이라 하여도 자연공원에 적합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고,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이 너무 많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집단시설지구정비에 참고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스키장이 일본에서는 공원시설물로 위치되어 있으나 우리는 스키장을 공원시설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원 내에서 스키장과 같은 대규모 토지형질의 변경 및 경관파괴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은 바람하다.

자연공원법, 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 등 관리규칙, 공원관리계획서 등의 내용에서 집단시설지구 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Table 10). 법은 시설지구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내용과, 이용을 위한 규제 행위를 다루고, 관리지침에서는 이용에 대한 허가행위와 규제행위만을 다루고 있어서 시설물 관리에 관한 내용은 없다. 반면, 공원관리계획서에서는 집단시설지구별 기본방침과 도입되는 주요 시설물에 대해 규모나 구조, 색채 등에 관한 디자인 방향을 다루고 있다. 즉 법 및 관리지침에서는 이용자의 이용행위를 다루고, 관리계획서에서는 공원계획서의 집단시설지구별 정비방침에 따른 시설물 지도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관리계획에서 주목되는 것은 아소지역은 숙사건축물 하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반면에 쿠쥬지역에서는 숙사 및 휴게소, 야영장, 주차장 등 집단시설지구에 도입되는 시설들을 고루 다루고 있다.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관리계획의 내용을 보면 숙사에 대해 높이를  $18m$  이하로 규제하는 곳, 3층이하,

Table 8. The contents of the signboard regulations within Japan Natural Park

광고물 종류	규제 내용
(1) 점포, 사업소 또는 영업부지 내에서 소재지, 명칭, 상표, 영업내용, 토지소유자 또는 입주 소유자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	해당각호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허가하지 않는다. ① 표시면의 면적이 $5m^2$ 이하이고 동일부지 내 또는 동일장소 내에 있어서 표시면의 면적합계가 $10m^2$ 이하로 할 것 ② 표시면의 높이 또는 광고물의 높이가 5m 이하로 할 것 ③ 광원이 백색계일 것 ④ 움직이는 광원이나 점멸에 의한 것이 아닐 것 ⑤ 형광도료의 주·홍색이 공원이용자에게 필요이상으로 강한 인상을 미치는 색채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점포, 사업소 또는 영업을 하고 있는 토지로 유도하기 위한 것	해당각호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허가하지 않는다. ① 설치목적, 지리적 조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② 개개의 표시면 면적이 $1m^2$ 이하이고, 복수의 광고물 난립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합하는 것은 $10m^2$ 이하로 할 것 ③ 광고물이 난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그 난립 정도를 악화시키지 않을 것 ④ 표시면의 높이 또는 광고물의 높이가 5m 이하로 할 것 ⑤ 광원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광원이 백색계일 것 ⑥ 움직이는 광원이나 점멸에 의한 것이 아닐 것 ⑦ 형광도료의 주·홍색이 공원이용자에게 필요이상으로 강한 인상을 미치는 색채를 사용하지 않은 것
법 규	① 표시면의 면적이 $5m^2$ 이하일 것. 단 복수의 광고물 난립을 정리할 목적으로 하는경우는 $10m^2$ 이하로 할 것 ② 표시면의 높이 또는 광고물의 높이가 5m 이하로 할 것 ③ 표시면적이 $300cm^2$ 을 넘는 설치자 이름의 표시가 없는 것 ④ 동일광고물에 설치자 이름이 중복되어 표시된 것이 아닌 것 ⑤ 광원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광원이 백색계일 것 ⑥ 움직이는 광원이나 점멸에 의한 것이 아닐 것 ⑦ 형광도료의 주·홍색이 공원이용자에게 필요이상으로 강한 인상을 미치는 색채를 사용하지 않은 것
(3) 지도표, 안내판 그 외 당해 지역의 지리, 자연경관을 안내하거나 해설하는 것. 또는 당해 지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역사상의 사건 또는 문학작품 등에 관계하는 것으로 당해지와 관계를 소개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	① 표시면적이 $300cm^2$ 을 넘지 않을 것 ② 동일시설 내 설치자의 이름이 중복되어 표시되지 않은 것 ③ 상품명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④ 설치자의 영업내용의 선전문구를 사용한 것이 아닌 것 ⑤ 형광도료의 주·홍색이 공원이용자에게 필요이상으로 강한 인상을 미치는 색채를 사용하지 않은 것
(4) 광고물이 달린 벤치, 쓰레기통 등의 간이시설을 설치하는 것	-설치위치는 차보도 입출구, 분기점 -필요최소수로 하고 종합화 -규모는 법규(시행규칙에 준함)
관 리 계 획	-설치자는 차보도 입출구, 분기점 -필요최소수로 하고 종합화 -규모는 법규(시행규칙에 준함) -재료는 목재를 기본으로 함 -색채는 진한 갈색, 갈색 -문자는 백색이나 검정 -조명은 설치하지 않음이 원칙
상 업 용	-입간판은 불허하고 영업부지내 2개까지 인정 -규모는 법규(시행규칙에 준함) -색채는 진한 갈색, 갈색에 문자나 마크 등에는 원색, 형광색 등을 피하고 색수도 최소화함. -조명은 외부투사형의 백색광으로 함.

Table 9. Comparison of zoning details in the collective facilities areas between Korea and Japan

용도상세	일 본	한 국	용도상세
숙박시설구	주로 숙사 건설하는 지구	숙박시설,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	숙박시설지
야영시설구	야영장,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지구	상업시설,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	상업시설지
자연탐승구	자연탐승을 위한 보도를 설치하는 지구	업무시설 및 의료시설과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	공공시설지
휴양원지구	원지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지구	조경 및 공원보호 · 관리를 위한 소규모의 공중변소 · 안내소 등의 공공시설이 필요한 지역	녹지
공공시설구	주차장, 안내소, 휴게소, 광장 등을 설치하는 지구	그 외 기타시설이 필요한 지역	기타시설지
운동시설구	운동장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지구	이용자 증가에 대처할 예비지로서 필요한 지역	유보지
스키이용구	스키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지구	-	-
수변이용구	수영장, 선유장 등을 설치하는 지구	-	-
교화시설구	박물전시시설 등을 설치하는 지구	-	-
관리시설구	오물 · 종말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지구	-	-

11m 이하, 또는 당해지구 내 가장 높은 건물높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곳 등 그 기준이 다양하다. 색채규정에 있어서도 아소지역은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한다고 하고, 쿠쥬지역은 지붕색은 진한 갈색, 벽면은 흰색 · 베이지색 · 짙은 노랑 등으로 구체적인 색채를 지정하고 있다. 관리계획에서 인허가에 대한 취급방침을 어느 정도까지 상세한 내용으로 정리해야 하는가라는 과제를 앓고 있지만 지역특성을 고려한 시설물의 관리기준을 수립하여 공원현장에서 인허가에 활용되고 있는 지역경관을 보호 · 유지하는 데 매우 유익하다고 판단된다.

## 결 롬

국립공원의 경관관리는 공원 내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에 관한 인허가, 이용자 이용패턴, 공원시설물의 정비 등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의 명칭이 국립공원 · 야생생물 사무소에서 자연보호 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국립공원 내(보통지역은 제외)의 각종 행위에 관한 심사지침이 2000년 4월부터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1조 행위의 허가기준으로 법제화되어 각종 행위와 공원시설물 정비에 있어서 자연공원이 지니고 있는 자연풍치, 경관 등을 적극적으로 보호 · 관리하고자 한다.

일본의 자연공원 경관관리는 자연공원법규, 국립공원 내 집단시설지구 등 관리규칙, 각 공원별 관리계획서 등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공원법규에 각종 공원행위에 관한 허가기준을 상세히 취급하고, 공원계획서에 따른 보호시설계획과 이용계획시설의 방침이 수립되고, 각 공원별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인허가 취급요령을 관리계획서에 수립하는 것이 특징이다. 관리계획서에는 풍치경관관리를 위한 사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지역별로 집단시설지구의 기능과 정비방향 및 주요 단독시설인 숙사, 차도, 휴게소, 안내판의 관리방향과 사용색채 등을 지정하여 공원 현장에서의 인허가에 지침 및 지도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허가 규제내용에서 공용제한을 하는 것은 국내의 용도제한과 유사하나 집단시설지구가 이용시설로 위치되고, 공원시설물의 종류에 보호시설 및 교화시설이 있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법규에서의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집단시설지구의 용도를 상세히 하여 용도에 적합한 시설만을 적절히 도입하여 시설에 관한 디자인 지도를 실시하는 것은 좋은 사례로 인용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1) 지역체공원관리제도: 자연 공원 내에는 공원목적 이외로 사용되는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등이 포

**Table 10. The guiding principle in the management of the collective facilities areas within Japan Natural Park**

함되어 그 곳에서 임업, 농업, 광업, 전력생산 및 관광 등의 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지역주민도 거주하게 되며, 이러한 가운데 수려한 자연경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인공구조물의 신축 및 삼림벌채 등의 현황변경행위에 대한 규제 및 자연환경보호와 산업적 토지이용을 조정하는 제도 → 원칙적으로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도시공원은 영조물적 관리제도가 적용됨.

2)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을 지형 및 토지이용 등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공원지역을 복

수의 관리지역으로 나누어 풍치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인허가/신고사항 등의 취급방침을 정한 지역을 말함.

3) 阿蘇·쿠쥬(くじゅう) 국립공원은 阿蘇지역과 쿠쥬지역으로 나누어진다. 阿蘇·쿠쥬국립공원은 세계최대의 카르데라를 형성하는 阿蘇화산과 이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넓게 펼쳐지는 초원경관의 특색을 지닌 공원이며 산진달래군락이 5월이면 절경을 이루는 곳이다.

## 인용문헌

- 김계환, 박종민(1998) 변산반도국립공원 내 순비기나무군락의 생육환경 및 형태적 특성. *환경생태학회지* 12(1): 91-101.
- 김대현, 구본학(1999) 경관영향평가 기법을 통한 땅건설에 대한 경관영향평가. *한국조경학회지* 127(4): 80-86.
- 김용근, 최성식, 조중현(1996) 오대산국립공원 이용객 행태조사. *환경생태학회지* 9(2): 187-196.
- 배중남(1994) 자연경관에서 건축물의 건축위치와 시거리 변화에 따른 조망경관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 (16): 65-74.
- 서주환, 최현상, 김상범, 이철민(1999) 형태지수를 이용한 도로경관의 선호성 분석에 관한 연구 -설악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127(4): 87-94.
- 신익순, 오규균(1999) 공원시설의 친환경성 증진을 위한 자연공원법제 고찰. *한국환경생태학회지* 14(2): 139-153.
- 오구균, 권태호, 신익순, 배중남(1999) 생태계 보전을 고려한 공원시설물의 정비 및 조성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국립공원관리공단*, 334쪽.
- 유기준, 김용근(2000) 지리산국립공원 이용객 행태 및 이용·관리에 대한 중요도-성취도 분석. *한국환경생태학회지* 13(4): 367-374.
- 임윤희, 오구균(1999) 내장산국립공원 굴거리나무 개체군의 생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지* 13(1): 17-33.
- 조태동, 이명우, 김진선(1997) 우리나라 자연공원인 용도지구제 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2(5): 185-202.
- 沼本建司, 배중남, 古谷勝則, 油井正昭(1996) 조망지점에서 감상하는 자연경관 경관평가에 관한 연구. *일본조원학회* 59(5): 165-168.
- 福富久夫, 石井弘(1985) 緑の計画. (株)지구사. 東京. 267쪽.
- 古谷勝則, 배중남, 油井正昭, 石井弘, 児島隆政, 沼本建司(1994) 자연경관지의 조망경관인식특성에 관한 연구. *일본조원학회* 57(5): 283-288.
- 第一法規(1995) 自然公園實務必携. 東京(일본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집단시설지구 등 관리규칙 등). 874쪽.
- 환경청(1990) 阿蘇・くじゅう국립공원 阿蘇地域관리계획서. 40쪽.
- 환경청(1991) 阿蘇・くじゅう국립공원 くじゅう지역 관리계획서. 52쪽.
- 환경청(1995) 阿蘇・くじゅう국립공원 지정서 및 공원계획서. 147쪽.